

#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회기명 : 제1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답변일 및 순서	의원명	질 문 내 용	답변부서	답변자
2010. 9. 1 (수) 14:00	1 이정임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림지 관리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의림지 관리현황 및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문화관광과)</li> <li>- 의림지 제림(堤林) 보존 및 명소화 사업현황 (문화관광과)</li> <li>- 의림지천 하천정화사업실적 및 솔밭공원관리 현황 (건설방재과, 산림공원과)</li> <li>- 『비룡담(제2의림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 (지역개발과)</li> </ul> </li> </ul>	문화 관광과 (취합 작성)	미래경영 본부장
	2 김호경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 에코세라피(Eco-therapy)건강특구 지정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까지의 진행현황(용역비, 사업설명회 등 진행예산 포함)</li> <li>- 향후 추진계획</li> <li>- 지역종합개발지구(웰빙휴양타운)와의 연계 가능성 여부</li> </ul> </li> </ul>	한방 경제과	한방 경제과장
2010. 9. 2 (목) 10:00	3 김꽃임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롯데마트 제천점 신축 및 기부채납 조건이행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롯데마트 제천점 신축 경위 (건축디자인과)</li> <li>- 기부채납 확장도로 추진현황 (지역개발과)</li> <li>- 롯데마트 개점 후 소상공인 보호대책 (한방경제과)</li> </ul> </li> </ul>	한방 경제과 (취합 작성)	미래경영 본부장

# 답변서

질문의원	김꽃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제목	롯데마트 제천점 신축 및 기부채납 조건이행에 대하여?

## 질문요지

- 롯데마트 제천점 신축 경위(건축디자인과)
- 기부채납 확장도로 추진현황(지역개발과)
- 롯데마트 개점 후 소상공인 보호대책(한방경제과)

## 답변내용

- 항상 지역 발전과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시는 제천시의회의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특히,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소동일원의 롯데마트 개점 후에 우리 지역경제의 발생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꽃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드릴 순서는
  - ① 롯데마트 제천점 신축경위와
  - ② 기부채납 확장도로 추진현황
  - ③ 롯데마트 개점 후 소상공인 보호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롯데마트 제천점 신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소동 76번지와 17필지에 롯데쇼핑(주)에서 신축중인 판매시설은 대지면적이 8,778m<sup>2</sup>이고, 연면적 8,241.65m<sup>2</sup>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은 2,968.79m<sup>2</sup>가 되겠습니다.

- 그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 당초 건축주인 (주)GS리테일에서 2005. 10. 21.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관련법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2005. 10. 27. 회신한바 있으며
  - 이에 (주)GS리테일에서는 하소동 76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 2005.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2006. 6. 13.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관련법 상에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나
  - 본 건축허가로 인한 주변교통불편이 예상되고, 제천유통단지조성사업과 관내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영세상인들의 대책과 병행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는 관련부서 의견이 있어
  -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2006. 9. 7. 주차장 추가확보 및 교통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하였으며, 건축허가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위치 : 하소동 76외 7필지(늘푸른주요소옆)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
    - 건축면적 : 2,677.58m<sup>2</sup>(건폐율 : 66.03%)
    - 연 면 적 : 4,950.77m<sup>2</sup>(용적률 : 120.43%)
    - 매장면적 : 2,950.64m<sup>2</sup>
    - 동수 및 층수 : 1개동, 지하1층/지상3층
    - 주 차 장 : 50대(2층옥상)
- 그 후 2008. 8. 29.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어, 2008. 9. 3. 착공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 2008. 10. 17. 부지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고, 2009. 2. 5. 건축허가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2009. 6. 16. 변경허가 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당초허가(변경전)	변경허가(변경후)	비고
대지면적	4,055m <sup>2</sup>	8,778m <sup>2</sup>	증4,723
건축면적	2,677.58m <sup>2</sup>	5,973.66m <sup>2</sup>	증3,296.08
연 면 적	4,950.77m <sup>2</sup> (매장면적 2,950.64m <sup>2</sup> )	8,241.65m <sup>2</sup> (매장면적 2,968.79m <sup>2</sup> )	증3,290.88
용 도	판매시설(상점)	판매시설(상점)	
층 수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2층	
주차대수	50대(2층옥상주차)	127(1층옥상)	

○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변경내용은

- 대지면적이 4,055m<sup>2</sup>에서 8,778m<sup>2</sup>로 4,723m<sup>2</sup>가 증가되고
- 연면적도 4,950.77m<sup>2</sup>에서, 8,241.65m<sup>2</sup>로 3,290.88m<sup>2</sup>가 증가 되었으며
- 층수는 지상 3층에서 지상 2층으로 1개층 감소되었습니다.
- 또한, 주차장은 당초 50대에서 127대로 77대를 추가확보하고
- 주 진입로인 35m도로변에 1개차선을 별도 확보하여 차량 진입에 따른 교통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등 조건부 건축허가 된 내용을 변경허가 시 반영 하였습니다.

○ 그 후 건축주를 “(주)GS리테일”에서 “롯데쇼핑(주)”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가 2010. 4. 30. 접수되어, 2010. 5. 12. 수리 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약 30%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답변서

질문의원	김꽃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직위 : 미래경영본부장 성명 : 함대희
제목	롯데마트 제천점 신축 및 기부채납 조건이행에 대하여?
질문요지	○ 기부채납 확장도로 추진현황
답변내용	<p>○ 다음은 “기부채납 확장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앞서 건축허가 경위에서 말씀드린 데로</p> <p>○ 2006. 6. 13. GS리테일에서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 9. 7. 건축허가 되었고,</p> <p>○ 2007.2.23. GS리테일에서 제천시로 소로2-37호선 폐지요청이 있어 제천 시에서는 시에서 개설계획인 도로이고, 대형점 입점 시 중소상인 피해우려 등을 이유로 2007.4.26. 폐지 불가함을 통보 하였습니다.</p> <p>○ 이에 GS리테일에서는 2007.6.1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도로폐지 민원을 신청하고, 제천시는 2007.7.13. 고충위 조사관의 현지조사와 2007.8.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07.8.27. 계획도로 폐지 권고 통보를 받았습니다.</p> <p>○ 제천시에서는 부득이 2008.2.19.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도로(소로 2-37호선) 일부구간 폐지변경 안을 심의하고, GS에서 고충위에 민원제출 시 도로폐지로 인한 공적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인근 상습 교통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제시된바 있는 인근 중로 2-1호선의 길이 약100m(폭10m) 구간 확장 기부채납 약속 등을 근거로, 도시계획재정비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서부교 ~ 현대아파트간 L=500m 구간의 교통병 목구간 해소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중로 2-1호선(B=15m)을 대로 3-11호선(B=25m)으로 변경 자문하고,</p>

- GS리테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련 기본방침(대형점 계획 없음, 중로2-1호선 확장개설 등)을 제출 받았으며,
- 그 후 2008.10.17. 소로2-37호선에 대하여 제천시 고시 제2008-78호로 변경(일부 폐지)결정고시 하였습니다.
- 2009.2.27. GS리테일에서 제시한 GS마트관련 주변정비사업 즉, 남측 도로 폭 25m 확장개설은 건축물 완공 이전 협의 하에 점진적으로 개설, 이익발생시 장학재단 기부 등 추진계획이 제출되었고
- 2009.2.5. 건축허가 변경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09.6.16. 건축허가가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 그 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되어 2008.3.11. 충북도에 신청되었던 중로 2-1호선 확장 건이 2009.12.31. 대로3-11호선으로 충북 도고시 제2009-345호로 변경결정고시 되고,
- 2010.2.25. 개발행위기간 변경(당초 2010.2.28.→2011.2.28.) 신청되어 제천 시에서는 인근 중로가 2009.12.31. 대로로 확장결정고시 되었음에 따라 그 동안에 GS 리테일에서 제출되었던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을 요구하여, 2010.4.8. 인근 대로 3-11호선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L=227m에 대한 설계, 보상, 공사비 등 일체의 사업비를 사전 위탁, 제천시에서 사업시행 하되 사업 시행 시기는 건물공사 착수 후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착수)을 제출받아 2010.4.19. 개발행위기간연장(조건부여)허가 하였습니다.

- 또한 2010.5.3. (주)GS리테일에서 롯데쇼핑(주)로 건축관계자 변경 신청된 후 2010.5.11. 롯데쇼핑(주)에 2010.4.8. GS리테일에서 우리시로 제출된 주변정비 보완계획 등 GS에서 제출된 내용의 인수를 요구하여 이행계획을 보완 제출받고,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그 내용을 부여하여 2010.5.1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 이후, 2010.7.23. 롯데마트에서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부여된 대로 3-11호선의 확장비용 즉, 보상비 2,480백만원 감정평가비 13백만원, 도로개설비 1,142백만원 총 3,635백만원이 제천시 세입세출 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 이에, 입금된 사업비에 대하여 우리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우선 2010. 10월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에 대하여 투용자 심사, 2010.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 2010년 2회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도로확·포장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 후 보상(토지 14필지, 지장물 3동)을 실시하고 도시 계획도로 확장(L=227m, B=25m)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사업을 시행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편입주민의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상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답변서

질문의원	김 꽃 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미래경영본부장 함 대희
제목	롯데마트 체천점 신축 및 기부채납 조건이행에 대하여?

질문요지

- 롯데마트 개점 후 소상공인 보호대책?

답변내용

- 마지막으로 롯데마트 개점 후 소상공인 보호대책입니다.
- 우선, 롯데마트 개점 후 지역상권의 변화와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동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12월말 강제동 이마트 개장에 이어 롯데수퍼 청전점의 배가 되는 하소동 롯데마트가 9월말 개장이 되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를 우려하여 롯데마트 개점을 위한 건축공사와 관련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체천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 중기청에 사업 사전조사신청에 이어 7월 1일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성신청을 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7월 22일 롯데마트 건물공사현장에서 상인연합회원 400여명이 참여하여 롯데마트 개장 반대집회를 하였으며 향후 중기청의 사업조성과 연계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롯데마트 개점 후, 소상공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간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태백권, 경북 북부권의 물류상업 도시로 발전해 왔으나 교통, 유통환경의 변화, 산업구조의 개편, 소비자의 구매형태의 변화로 인구의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 도시의 생산 및 소비의 총량이 급감하고 소비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한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문제가 해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의 증가와 건강, 휴양, 관광을 통한 유동인구 유입으로 도시전체 산업총량 증대를 위한 큰틀의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민선5기에서는 시정목표를 성공 경제도시, 건강 휴양도시로 정해 기업투자유치와 건강휴양 관광경기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책은 유통환경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서비스개선사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사업 추진과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유치 마케팅, 자매결연, 장보기 행사, 상품권 애용, 전통시장 러브투어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 2010년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아케이드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 중앙시장 및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과, 2012년 이후 동문시장 아케이드 사업, 약초와 역전시장의 주차장 조성 등 1시장 1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시장의 특성을 살려 중앙시장의 의류 및 먹자골목 활성화와 내토시장 동문시장의 식료품 전문상가로 조성, 역전시장과 약초시장을 러브투어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으로**

- 제천사랑(재래시장 및 희망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다변화하는 시장환경과 유통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와, 상인대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점포 경영컨설팅을 통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과 전국최고의 활성화된 선진 전통시장을 견학하여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청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공동마케팅지원사업에도 적극 지원 및 응모하여 다양한 이벤트 및 경품행사, 고객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사업 추진 방안으로**

- 유통환경과 유통단계의 변화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고비용 발생으로 중소유통 물류사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와 도소매협회 등의 물류센터의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으로는**

-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제도를 도입하여 어려움에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난을 해소 토록 하겠습니다.
- 특히, 관내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소상공인 특화보증을 위한 금리를 인하하여 경영안정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시민운동으로는**

- 전통시장별 관내기업 및 단체별 수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시장과 소비자간 거리를 좁혀 고객층을 넓혀나가고
- 관내 기관 및 단체별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협약 등을 맺어 단체별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정례적인 장보기 행사와, 추석절 등을 이용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등을 추진 시민과 함께 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는**

-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소비욕구는 빠른 유통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항이기에 이러한 유통환경에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정체성 확립, 고객유치를 위한 판매기법 및 친절서비스 등 마케팅 및 경영 인식 제고, 상인회원 간 불신해소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계도해 가겠습니다.

**〈일곱째〉 대형마트의 지역 환원사업 및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운영으로**

- 대형마트로 하여금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민 우선 채용, 영업이익의 일부 지역 환원 등 통하여 대형마트가 우리지역에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닌 서로가 상생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특히,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금년 3월 첫 모임을 갖고 매분기 대형마트와 지역소상공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롯데마트가 오픈되면 업체 대표도 본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시켜 소상공인과 상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일반 상점가에 대한 대책으로**

- 그동안 정부정책에 의거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위주로 각종 현대화사업과 경영마케팅 사업을 우리시도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추진해 왔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시내전역의 상점가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의 모든 상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 결국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는 행정기관의 지원에 의한 개선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향상과 환경 변화에 대한 상황인식이 변화의 주체가 될 때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는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 특히, 소상공인들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전통시장과 지역전체를 바로 보는 자세로 활성화에 임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민선5기를 맞이하여 우리시에서는 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책을 끊임없이 연구개발 발굴토록 하겠으며
- 특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별 특성화 작업을 통해 우리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풀어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꽃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